

생활안정과

연번	세부사업명	
1	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	
2	의료급여 수급자 지원	
	2-1	건강관리 Up 의료비 Down
	2-2	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
3	「행복배달」 생일축하문자 전송	
4	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	
5	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	
	5-1	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
	5-2	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
	5-3	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
	5-4	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
6	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	

1

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□ 필 요 성

-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가족관계 해체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
- 무연고·저소득 주민 사망 시 공영장례 지원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 및 고인의 존엄성 유지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 - 총사업비 : 30백만원
 - 대 상 :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와 저소득 주민으로
 -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
 -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경우
 -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사업내용
 - 수의·관·유골함 등 장례용품 지원
 - 운구료·장례식장·화장시설 등 사용료 지원
 -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-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※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% 범위 내 지원

2. 세부추진계획

- 추진계획 수립 : '24. 1월
- 공영장례 운영 및 지원 : '24. 1 ~ 12월

3. 기대효과

-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 의식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
- 저소득 주민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실현

2

의료급여 수급자 지원

▷(근 거) 「의료급여법」 제5조(보장기관), 동법 제5조의2(사례관리)

▷(필요성)

- 의료급여 수급자 중 습관성 물리치료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능력 증진
-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자 퇴원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도모

▷(추진방향)

- 적정 의료 이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
-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통한 장기입원자 기관부담금 예산 절감 기대

□ 주요내용

2-1. 건강관리 Up 의료비 Down

- 사업기간 : 2024. 2 ~ 11월
- 사업비 : 3백만원 (국비 2.4, 도비 0.6)
- 대상 : 30명(의료급여 수급자 중 물리치료 과다이용자)
- 사업내용
 -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 물리치료 과다이용자를 추출하여 건강관리 용품 제공
 -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의료급여제도 안내
- 세부계획
 - 추진계획 수립 : '24. 2월
 - 대상자 선정 및 지급 : '24. 3월
 - 사업 결과 보고 : '24. 11월

2-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
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사업비 : 43백만원 (국비 34, 도비 9)
- 대상 : 6명(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2명)
- 사업내용 : 1인당 월 602,530원 이내
 - 의료지원 : 의료·영양 상담 및 외래 이용 모니터링
 - 돌봄지원 : 청소, 세탁, 음식 조리 등 가사·간병 서비스 제공
 - 식사지원 : 대상자 필요에 따라 일 1~3식 제공
 - 이동지원 : 병원 진료 교통차량 연계 및 교통비 지원
- 세부계획
 - 추진계획 수립 : '24. 1월
 - 대상자 모니터링 : '24. 1 ~ 12월
 - 사업평가 : '24. 12월

1. 사업개요

☐ 필요성

-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등 고위험 가구 발생
-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수급자의 고독감 및 소외감 해소

☐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총사업비 : 비예산
- 대상 : 5,200여가구(1인 생계급여수급자)
- 운영방법 : 문자메시지 시스템 활용(UMS)
- 사업내용 : 당일 생일축하 문자 전송
예) 소중한 당신의 생일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오늘은 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

2. 세부추진계획

- 추진계획 수립 : '24. 1월
- 1인 가구 명단 파악 : 매월 초
- 생일축하 문자 전송 : 수시

3. 기대효과

-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지시켜 자존감 향상 기여
- 행정기관의 작은 관심으로 개인 삶의 활력소 제공

4

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

1. 사업개요

□ 필 요 성

-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저소득주민 최저생계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
-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감동 복지행정 구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총사업비 : 44,655백만원(국비 36,302 도비 2,910 시비 5,443)
- 대 상 : 10,268가구 (2023년 기준) ※2022년(9,731가구) 대비 5.5% 증가
- 주요사업 : 기초생계·의료·교육급여 및 해산·장제급여 지원
- 사업내용

구 분	선정기준	지원대상	지원내용
생계급여	중위소득 32% 이하	7,018가구	•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차등 지원
의료급여	중위소득 40% 이하	6,427가구	•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
교육급여	중위소득 50% 이하	1,513가구	• 교육활동지원비·수업료 등 지원
해산급여	기초생활수급자	-	• 출산 시 1인당 700천원 지급
장제급여			• 사망 시 1인당 800천원 지급

2. 세부추진계획

-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내용 홍보 : '24. 1월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기·수시급여 지원 : '24. 1 ~ 12월

3. 기대효과

-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고취

담당부서 : 생활안정과 사회보장팀 (☎2751)

▷(근 거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, 제18조의4 (자산형성지원) 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,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,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▷(필요성)

-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·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안착 지원
- 주거안정자금 및 장학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학습의욕 고취

▷(추진방향)

-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일자리 제공
- 수급유형 및 계층에 따라 적합한 자산형성사업 가입 유도
 -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: 희망저축계좌 I, II
 - 근로하는 중간계층의 청년 : 청년내일저축계좌
- 주거안정자금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

□ 주요내용

5-1.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

- 사업기간 : '24. 1 ~ 12월
- 사업비 : 4,342백만원(국비 3,809 도비 122 시비 411)
- 사업대상 :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
- 사업내용 :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(지역자활센터 운영,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, 지자체 자활근로사업)
- 세부계획
 - 추진계획 수립 : '24. 1월
 -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: '24. 1 ~ 12월
 - 자활사업 성과평가 : '24. 12월

5-2.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

- 사업기간 : '24. 1 ~ 12월
- 사 업 비 : 1,566백만원 (국비 1,410 도비 47 시비 109)
- 사업대상 : 근로활동하고 있는 저소득계층(약 960명)
- 사업내용 : 저소득층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·교육적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
 - * 신규사업 : 희망저축계좌Ⅰ,Ⅱ/청년내일저축계좌
 - * 기존사업 : 희망키움통장Ⅰ,Ⅱ/청년희망·내일키움통장/청년저축계좌
 - 신규사업으로 통합되어 신규가입 없음
- 추진현황 및 세부계획
 - 추진계획 수립 : '24. 1월
 -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·선정 및 지원 : '24. 1 ~ 12월

5-3. 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 사업

- 사업기간 : '24. 3 ~ 12월
- 사 업 비 : 390백만원(시비)
-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(월세, 무료임차 등)
- 사업내용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전세입주보증금 등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
 - 전세입주보증금 세대당 3천만원 지원(무이자, 3년, 2년 연장가능)
- 추진현황 및 세부계획
 - 추진계획 수립 : '24. 2월
 - 주거안정자금 대상자 모집 및 지원 : '24. 2 ~ 12월

5-4.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

- 사업기간 : '24. 10 ~ 11월
- 사 업 비 : 30백만원(시비)
- 사업대상 : 저소득주민(수급자 및 차상위)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
- 사업내용 :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능력 향상
 - 고등학생 : 40명 × 500천원 = 20,000천원
 - 대 학 생 : 10명 × 1,000천원 = 10,000천원
- 추진현황 및 세부계획
 - 추진계획 수립 : '24. 9월
 - 장학금 대상자 모집 및 선정 : '24. 10월
 - 장학금 지원 : '24. 11월

6

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

1. 사업개요

□ 필 요 성

-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 조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
-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복지재정의 효율성·적정성 강화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총사업비 : 비예산
- 대 상 : 76,059명(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관리대상자)
 - 신청자 11,116명 / 관리대상자 64,943명
- 사업내용
 - 기초생활보장 등 16종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보장 조사
 -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(상·하반기, 월별) 및 수시변동조사
 - 복지서비스 기준 완화 적용 누락대상 없도록 사후관리
 - 조사 부적합에 대한 타 보장 및 후원 연계 등으로 위기 상황 대처
 - 「복지소통데이」를 통한 다양한 사례 공유 및 선정기준 표준화

2. 세부추진계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○ 추진계획 수립 | : '24. 1월 |
| ○ 신청조사 및 급여결정 | : '24. 1 ~ 12월 |
| ○ 정기확인 및 수시변동 조사 | : 상·하반기, 월별 |
| ○ 사후 모니터링 | : '24. 1 ~ 12월 |

3. 기대효과

- 대상자별 자격, 급여내용 분석 등 변동 관리 강화로 누락·중복 차단
- 소득 등 변동사항 성실신고 유도로 부정·부적정 수급 사전 방지